


2007. 12. 17(월) 10:00

 제142회 정례회(제3차 본회의)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[심 사 보 고 서]

거창군의회
(산업건설위원회)

《의안번호 제2007 - 59호》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16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산림환경과)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20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12월 4일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59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림환경과장 김삼수)

가. 제안이유

-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배출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 조문 변경
 - 「폐기물관리법」
 - 제13조 ⇒ 제14조(안 제5조제2항·제6조제1항·제12조제1항·제21조제1항)

- 제26조 ⇒ 제25조(안 제12조제1항 · 제13조제1항부터3항)
- 제63조 ⇒ 제68조(안 제8조제2항 · 제11조제1항 · 제24조)

나.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항 신설(안 제11조제5항)

-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서 종 진)

-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존과 폐자원 모으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해오는 단체 등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1998년부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에 대하여 “재활용품 수집 장려금”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 2007. 5. 25.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,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론 요지 : 생 략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